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ZEB-탄소거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장

1. 모집개요

□ (목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가 후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후보군)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중에서도 지역 전략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중점 지원하는 특구

※ 규제자유특구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 신속확인(법 제85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법 제86조제1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구명)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최종 특구사업자 선정 시부터 4년이내
※ 법제화 진행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 (주요 사업내용)

No	사업명	내용
1	AI기반 재생에너지·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ZEB 자립률 혁신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요구에 따라, 외부재생 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구매량을 ZEB에너지 자립률로 인정하는 규제 특례를 실증하여 ZEB보급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차세대 ZEB표준모델 및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및 인증기준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상 재생에너지 직접전력 거래 (직접PPA) 규제 완화 - AI 에이전트 기반 ZEB 특화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 구축 - ZEB 에너지자립률 개선 및 1등급 이상 인증 달성을 실증
2	AI기반 시민참여형 전력 /탄소배출 거래 ZEB실증 및 사업화	시민참여를 통한 K-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증화 서비스 활용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사용자 중심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및 실증 - 시민참여형 탄소배출권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생태계 기반 구축 - sLLM기반 에너지 피드백 플랫폼 서비스 개발 실증

(신청자격)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거나, 향후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단, 아래의 사전제외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통운영요령에 의하여 신청이 불가함

사전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9.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지원내용) 특구가 최종 선정(규제자유특구위원회)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지원
 - (인프라)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등을 연계지원
 -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12. 26.(금)
- 접수기간 : 2025. 12. 26.(금) 18:00까지 도착분(수신)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처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pes815@korea.kr / ☎ 062-613-3251)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sbsung@chosun.ac.kr / ☎ 062-608-5736)

□ 신청방법

-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바람)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필 수	1.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2. (양식2) 보안각서 2.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5.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6.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1부
해당시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8.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3. 선정평가

(평가방법) 서면 또는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서면평가)로 대체 할 수 있음.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평가지표

구분	배점	평가항목(평가내용)	
필요성	30	◦ 규제사항 해당여부	◦ 실증대상의 관련 규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 실증특례의 필요성	◦ 실증특례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추진 체계	25	◦ 사업추진 역량	◦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특구사업자의 보유 역량과 참여의지
		◦ 실행가능성	◦ 추진체계 및 추진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계획의 적정성	25	◦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 추진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내용,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기대효과	20	◦ 사업화	◦ 수혜기업의 성장 가능성
		◦ 파급효과	◦ 산업 및 지역으로 기여도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절차	추진 일정	주요 내용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25.12.17.~12.26.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공고·접수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25.12.29~12.31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현장점검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 결과 통보	~'26.1.9	특구사업자 서면 평가 및 결과 통보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	'25.12~'26.1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자문단 과제기획 점검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과제 최종 선정	'26.2.~4.	분과위원회 후 심의위 상정 과제 결정, 심의·특구위원회 최종 선정

* 추진일정은 중앙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광주광역시에서 선정한 특구사업자 및 혁신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과정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정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음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특구사업자 최종 선정 시, 실증 특례 수행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발생함

양식 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의향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기본 정보

혁신사업명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특 구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번지와 15필지 119,363㎡		
지 정 기 간	2026. 8. 31. ~ 2030. 07.31. (48개월)		
세부사업	사업명	내 용	신청 희망 ✓
	AI기반 재생에너지·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ZEB 자립률 혁신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요구에 따라, 외부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구매량을 ZEB에너지 자립률로 인정하는 규제 특례를 실증하여 ZEB보급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차세대 ZEB표준모델 및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AI기반 시민참여형 전력/탄소배출 거래 ZEB실증 및 사업화	시민참여를 통한 K-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증화 서비스 활용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사용자 중심 에너지 전환 모델 개발 및 실증	

2025년 12월 일

기업/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 귀하

양식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본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 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형태의 정보, 자료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광주광역시와 명시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지자체나 기관, 기업 관계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 만약 보안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12. .

소 속 기 관 :

성 명 : (인)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광주광역시의 「ZEB-탄소거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관련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2029년 12월 31일까지

4. 동의거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신규 특구사업자 모집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 12. .

소 속 기 관 :

대 표 자 : (인)

양식 4 신청기업 현황자료

신청기업/기관 현황자료					
특구사업 자명	ZEB-탄소거래 글로벌 혁신 규제 자유특구				
일반현황	설립일			대표자	
	주소	(⊕)		특구내 위치여부	O/X
	사업자(법인)번호				
	기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기관 선택 ■ 표시			
	업종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활용 번호/분류명 기재			
주요생산품					
주요 수행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전체 사업내용이 아닌 특례 및 사업(P&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역할 요약 기재 				
특허 및 보유기술	특허(출원)	00개	특허(등록)	00개	보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보유기술) 				
생산·연구시설, 보유 장비 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 특례 및 사업(P&D, 인프라, 사업화 등)과 관련한 회사의 보유기술 및 특허, 기타 자산 등만 기재 				
	생산·연구 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시장 확보 역량 (기업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생산품, 보유기술의 시장 경쟁력 수준, 브랜드 인지도 등 기재 ○ 보유기술, 제품 등의 해외 수출현황 등도 필요할 경우 기재 				
재무상태 및 기업현황 (기업만)	구분(단위 : 억원, 명,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자산	총 자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총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비율*				
	상시 종업원 수				
	연구개발 투자액				
	신용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요령> ○ 공식적으로 제출가능하거나 공증된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이익률, 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수행 중인 정부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과제명(예산 : 억원, 소관부처명 : , 시작종료일 : 000000~111111, TRL : 00단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요령> ○ 기타 알고 있거나 알려야 하는 사항 기재(ex. 특구사업자들과의 관계, 가족회사 여부 등) 				

양식 5 실증사업 추진 계획서

1. 제품 ·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가. 제품 · 서비스 개요

명칭	유형	<input type="checkbox"/> 제품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선택 ■ 표시
실증대상 제품(서비스) 개요		

나. 실증특례 신청사유 (실증특례 지원 필요성)

실증특례 신청사유의 구체적 내용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해당 제품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선택 ■ 표시	
	관련법규	- (예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가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 한 규정 - (예시) 건강기능식품 가능성 원료 및 기준 ·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다. 제품 · 서비스 시장 현황 및 특성

국내외 관련 시장동향 (기업만)	
-------------------------	--

제품(서비스) 특징 및 차별성	
제품(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기업만)	
유사 제품 (기업)현황 (기업만)	<input type="checkbox"/> 국내 및 국외에 없음 <input type="checkbox"/> 국외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존재 <input type="checkbox"/> 조사 해본 적 없음 4개 중 중복 ■ 표시 후 아래 작성

라. 제품 · 서비스 특례 추진에 따른 이용편의 및 기대효과

소비자(이용자) 편의	
기대효과	

2. 실증특례 시행 계획서

실증특례명	ZEB-탄소거래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 구역	광주광역시	지정 기간	2026.8.1. ~ 2030.4.30.(4년)

가. 실증 목적 및 대상

실증특례 목적	
실증 대상	

나. 실증 방법

실증 항목 및 내용																																																																																																			
시험 · 검증 항목 및 방법																																																																																																			
세부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실증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요약</th> <th rowspan="2">추진내용 및 범위</th> <th colspan="12">추진일정(월)</th> </tr> <tr>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r> </thead> <tbody> <tr> <td>실증준비</td> <td></td> </tr> <tr> <td>안전확인</td> <td></td> </tr> <tr> <td>성능평가</td> <td></td> </tr> <tr> <td>분석</td> <td></td> </tr> <tr> <td>개선</td> <td></td> </tr> <tr> <td>결과보고</td> <td></td> </tr> </tbody> </table>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7년 실증 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8년 실증 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2029년 실증일정

요약	추진내용 및 범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증준비													
안전확인													
성능평가													
분석													
개선													
결과보고													

* 단, 기간은 추후 협약 일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특례 조문 (규제 조문)	특례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건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량만을 에너지 자립률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가능한 조항이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확보 및 인증기준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4항, 제17조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1항 2호, 3항 </div>
실증 특례	ZEB-탄소거래 글로벌혁신태구	「전기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는 발전설비 용량이 1,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전기사용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인 일반용(을) 또는 산업용(을) 고객이거나, 300kVA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로 제한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거래조건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재생에너지 구매 제약이 존재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제16조의 5 1항, 제31조 6항, 시행령 제19조 3항 - 「재생에너지 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3조 </div>